

■ 국립학교 설치령 [별표 6] <개정 2026. 2. 27.>

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(제9조제5항 관련)

학교명	과·담당관
강원대학교	32
경북대학교	16
경상국립대학교	15
국립공주대학교	11
국립군산대학교	10
국립금오공과대학교	3
국립목포대학교	12
국립목포해양대학교	1
국립부경대학교	11
부산대학교	14
서울과학기술대학교	9
국립순천대학교	10
국립경국대학교	10
전남대학교	17
전북대학교	12
제주대학교	12
국립창원대학교	10
충남대학교	13
충북대학교	12
한경국립대학교	7
국립한국교통대학교	10
한국체육대학교	2
국립한국해양대학교	10
국립한밭대학교	7